

< 일 러 두 기 >

- 법령명 : 식품원료 알파 글리코실 헤스페리딘의 사용제한
- 제정일 : 2024년 7월 11일
- 최종개정일 : -
- 출처 : 대만 식품약품관리서 (방문일 : 2024년 9월 20일)

# 식품원료 알파 글리코실 헤스페리딘의 사용제한

1. 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의1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.
2. 본 규정에서 정한 알파 글리코실 헤스페리딘( $\alpha$ -Glycosyl hesperidin) 원료는 감귤류의 과피, 과즙 또는 씨앗 등을 알칼리성 수용액으로 처리하여 헤스페리딘(hesperidin)을 얻은 후, 다시 cyclodextrin glucosyltransferase 반응으로 얻은 담황색에서 황갈색의 분말이다.
3. 전 항에서 얻은 알파 글리코실 헤스페리딘 원료는 아래 규격을 충족해야 한다.
  - (1) 알파 글리코실 헤스페리딘 함량: 30% 이상
  - (2) 용상(0.5g을 취하여 100ml 물에 용해): 침전
  - (3) 중금속(납으로 계산): 20 $\mu$ g/g 이하
  - (4) 납: 10 $\mu$ g/g 이하
  - (5) 비소(As<sub>2</sub>O<sub>3</sub>로 계산): 3.0 $\mu$ g/g 이하
4. 2항에서 얻은 알파 글리코실 헤스페리딘 원료의 일일 섭취제한량은 알파 글리코실 헤스페리딘으로 계산하여 450mg이다.